

한·미 항공보안관련 법규의 비교 연구

- 국내항공법과 미연방항공법의 비교 -

한 경 근* , 이 강 석**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s of civil aviation security
related between South Korea and U.S.A

Han K. K.* , Lee K. S.**

목 차

- I. 서 론
- II. 미국 운수성의 항공보안 전략적 목표와
한국건설교통부의 항공보안 분야 추진현황
- III. 미국과 한국의 항공보안관련 법규 비교
- IV. 국내 항공보안 관련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V. 결 론

Abstracts

A safe and secure civil aviation system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nation's overall security, physical infrastructure, and economic foundation. Although it is not fully known at this time what actually occurred or which of the weaknesses in the nation's aviation security apparatus contributed to the terrible events of 11 September in the U.S.A., it is clear that serious weaknesses exist in our aviation security system including regulation system. Actually, defectiveness of regulations structure and contents concerned in aviation security were discussed in various studies. On this study, we have identified defectiveness in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system by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14 CFR and Korean regulations. Finally, we are to provide some suggestions and alternatives to improve aviation security regulation system in this country.

*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교수

**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리학과 교수

I. 서론

산업의 발달과 고도 신기술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테러의 위협형태가 더욱 정교하고 극악무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의 항공기테러사건으로 여실히 증명되었다. 현재 미국의 항공산업 발전의 이면에는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의 위협이라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에 미연방항공청의 항공보안 위원회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경우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운수성(DOT) - 미연방항공청(FAA) - 항공보안위원회(ACS) 순으로 보안(security), 안전(safety), 조직적 우수성(organizational excellence)을 기준으로 하는 전략적 목표(strategic goals)가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즉, 운수성(DOT)은 보안측면에서 사람이나 재화의 이동을 위해 교통시스템의 보안을 확보하는 것과 국가보안전략을 지원하고, 안전측면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감소를 위한 연구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며, 조직적 우수성 측면에서는 결과나 혁신기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운수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각각의 목표로 삼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의 전략적 목표는, 보안측면에서는 보안사건을 예방하고, 안전측면에서는 2007년까지 미국의 항공사고중 치명적인 사고 부분(fatal accidents)을 1996년 사고발생 수준의 80%까지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조직적 우수성 측면에서는 21세기 FAA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생산적이며 다양한 고도의 기술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항공보안위원회(Aviation Commitment Security)의 전략적 목표는 보안측면에서는 “미국의 민간항공에 어떠한 공격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또한 “사람, 재산, 정보 등은 완전히 보호한다”라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이다. 안전측면에서는 미국의 민간항공에서 화물이나 위험물로부터 어떠한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조직적 우수성측면에서는 항공보안위원회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대외업무관계가 필요하며, 고도로 훈련된, 동기부여가 확실한,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의 확보가 전략적인 목표이다.

이렇듯 미국은 항공보안의 경우 운수성 이하 각 부처별 임무와 책임 및 업무절차가 명확하고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항공보안 관련 국내 법규는 국정보안 관리지침의 일부 조항에 의거 항공보안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항공법체계 내의 항공보안 관련 규정의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실무적용에 필요한 부처별 임무와 책임의 한계, 업무의 절차와 방법 등을 각 항공사와 기타 항공보안 실무 수행기관에서 자체 제정하여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연방항공법에서 항공보안법규정과 우리나라 항공보안 관련 법규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열악한 우리나라의 항공보안 관련 법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미국 운수성의 항공보안 전략적 목표와 한국 건설교통부의 항공보안분야 추진현황

1. 미국 운수성의 항공보안에 대한 전략적 목표

<표 2-1> 미국 운수성의 항공보안 전략적 목표

미운수성(DOT) 전략적 목표	미연방항공청(FAA) 전략적 목표	항공보안위원회(ACS) 전략적 목표
<p>보안 : 사람이나 재화의 이동을 위해 교통시스템의 보안을 확보하는 것과 국가보안 전략을 지원</p> <p>안전 : 교통사고자, 교통사망자의 감소를 위한 연구로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p> <p>조직적우수성 : 결과나 혁신기법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운수성의 능력을 향상</p>	<p>보안 : 보안사건의 예방</p> <p>안전 : 2007년까지 미국의 항공사고중 치명적인 사고부분을 1996년 사고발생 수준의 80%까지 감소</p> <p>조직적우수성 : 21세기 FAA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성, 다양성, 고도의 기술노동력 제공</p>	<p>보안 : 미국의 민간항공에 어떠한 공격도 성공할 수 없음, 사람, 재산, 정보 등은 완전히 보호</p> <p>안전 : 미국의 민간항공에서 화물이나 위험물로부터 어떠한 사망자도 없을 것</p> <p>조직적우수성 : 적절한 대외업무관계가 필요하며, 고도로 훈련된, 동기부여가 확실한,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 확보</p>

자료 : FAA, "Civil Aviation Security Strategic Plan 2001-2004", April 2001.

* FAA, "Civil Aviation Security Strategic Plan 2001-2004", April 2001.

2, 우리나라 항공보안 분야 추진 현황

<표 2-2> 우리나라 항공보안 분야 추진 현황

보안검색 장비 및 인원분야	항공기내 보안분야	항공보안 교육 및 훈련분야	제도개선 분야	항공보안 점검 및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탐지기능 강화 신형장비 2002년까지 교체 ● 폭발물 처리 (EOD) 전문인력보강 (한국공항공단) (인력중원14명) ● 폭발물탐지 및 처리요원 훈련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조종실 진입 및 진출을 예방, 보안장치 및 기내개조장치 보강(항공사) ● 보안담당 객실 승무원 무기휴대원 운영지침개정 ● 기내난동자 법적 제재강화 ● 항공사 자체보안 점검 및 진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보안교육기관 국내유치 추진 ● 객실승무원 보안 교육, 훈련 강화 ● 항공보안세미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보안관련 법규 제정 및 국가민간항공보안 지침 조기 제정 - 보안의 관련 기관 책임확대 - 항공보안시설의 보안대책 수립 - 공항검색요원 자격규정 확립 - 항공사 보안규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항공사 운항해외공항보안실태조사 ● 항공보안감독관 제도 도입(PSD)

자료 : 건설교통부 항공국, "항공보안 강화대책", 2001. 10.

III. 미국과 한국의 항공보안 관련 법규 비교

1. 미국의 항공보안관련 법규

가. Advisory Circular

<표 3-1> 항공보안관련 AC's와 관련 14 CFR(FAR)

AC No.	Title
00-58	Voluntary Disclosure Reporting Program (관련 FAR's : Part 21, 107, 108, 109, 121, 125, 129, 133, 135, 137, 141, 142, 145, 147)
107-1	Aviation Security - Airports (관련 FAR's : Part 107)
108-1	Air Carrier Security (관련 FAR's : Part 108)
108-2	Security Rules - Carriage of Weapons and Escorted Persons (관련 FAR's : Part 108)
108-3	Screening of Persons Carrying United States Classified Material (관련 FAR's : Part 108)
121-27	Guide for Obtaining Information Dealing with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by Air
134-4A	Aviation Security: Air Taxi Commercial Operations (관련 FAR's : Part 121)

나. 14 CFR(FAR)

<표 3-2> 항공보안관련 14 CFR(FAR)과 내용(계속)

Part	Title	Contents
108	Airplane Operator Security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프로그램의 채택과 이행 - 보안프로그램의 형식, 내용, 가용성 - 화물, 승객의 검색 - Hijacking이나 Sabotage 시도의 예방과 관리 - 무기의 운반 - 항공기 및 시설 보안 - 연방항공보안요원의 탑승 - 공무수행 공무원 - X-Ray 시스템의 사용 - 보안명령(Security Directives)과 정보회람(Information Circulars) - 보안 위협과 절차 - 폭발물 감지 시스템의 이용 - 무장요원에 의해 호송되는 승객의 탑승 - 훈련 - 보안프로그램의 인가와 수정 - 이행의 증거 제시 - 보안감독표준 - 검색요원 채용기준 - 채용기록, 확인 및 전과기록의 확인
109	Indirect Air Carrier Security (항공화물 취급자, 선적업자 등의 2차적인 항공운송사업에 적용되는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 보안프로그램 - 보안프로그램의 인가와 수정
121.153 121.309 121.313 121.379 121.571 121.583	Aircraft requirements: General. Emergency equipment. Miscellaneous equipment. Authority to perform and approve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and alterations Briefing passengers before takeoff. Carriage of persons without compliance with the passenger - carrying requirements of this part.	
129	Operations: Foreign Air Carriers and Foreign Operators of United States Registered Aircraft Engaged in Common Carri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 운항조건 - 감항증명 및 등록 - 미국국적 항공기에 필요한 정비프로그램 및 최소장비목록 - 운항승무원의 자격증명 - 항공기보안 - X-Ray 시스템의 이용 - 무기반입 금지 - 금연 - 중요정보의 보안

<표 3-2> 항공보안관련 14 CFR(FAR)과 내용

Part	Title	Contents
21.303	Replacement and modification parts.	- 부품교체와 개조
99	Security Control of Air Traffic	- 항공교통의 보안 통제
107	Airport Security (공항의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기를 포함한 정기운송사업에 적용 - 위조, 변조,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기입 - 보안프로그램의 인가 - 인가된 보안프로그램의 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 공항 운영자에 의한 보안프로그램 수정 - FAA에 의한 보안프로그램의 수정 - 항공운항구역(Air Operation Area)에서의 보안 - 출입통제시스템 - 공무수행의 협조 - 공무수행원(공무원) - 연방 법집행관의 이용 - 보안검색에의 협조 - 폭발물, 인화물, 무기류의 소지 - 전과, 인사기록 - 보안구역의 표시 - 이행의 증거 제시 - 이력서, 확인서, 전과기록의 확인

<표 3-2> 항공보안관련 14 CFR(FAR)과 내용(계속)

Part	Title	Contents
139	Certification and Operations: Land Airports Serving Certain Air Carri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 정의 - 인증과 운영의 요구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과 절차 - 인증 - 공항인증교범과 공항인증설명서 -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권 . 인원 . 안전구역 . 항공기구조 및 소방 : 목록의 결정 . 항공기구조 및 소방 : 장비와 기관 . 항공기구조 및 소방 : 운영 요구조건 . 위험물의 취급과 보관 . 공항의 비상계획 . 자가점검 프로그램 . 공항의 상태보고
191	Protection of Sensitive Security Information	- 민감한 보안정보의 보호

IV. 국내 항공보안 관련 법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항공보안관련 법규의 제정에 기본이 되는 부처별 전략적 목표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정부조직 혹은 책임 부서의 부재.

지난 10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항공보안강화대책에는 우리나라의 항공보안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와 지침을 조기에 제정하고 건교부 내에 항공보안 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할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항공보안과 관련된 정부의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고 각각의 전략적 목표가 결정되는 것이 관련 법규의 제정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 항공법 내에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별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의 내용 미비.

국내의 항공법 내에 항공보안관련 법규정은 항공법 제50조, 61조, 항공기운항안전법 등이 전부이다. 이들 법규정의 내용은 적용주체별로 실질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관련 법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법규정(14 CFR's)과 회람(Advisory Circular's) 그리고 지침(Directives) 등에서 공항과 항공운송사업자, 2차적인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항공보안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지침이 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규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제규정을 참고하여 항공보안의 운영주체가 각각의 보안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국내 항공법 상의 관련법 제정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집단의 기술적 접근 형태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람과 지침을 통하여 수정과 보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개정되는 항공보안 관련법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항의 보안
-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 2차적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
- 항공보안의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는 '공항의 인증과 운영'
- 민감한 보안정보의 보호
- 국내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와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항공보안 인증 절차
- 위의 항공보안 관련법의 수행에 요구되는 기타법규정의 수정

- 별도의 지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 민간항공 보안시스템의 평가 프로그램
- 민간항공 보안시스템의 검열 프로그램
- 항공보안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항공보안 정보시스템의 운영

V. 결 론

-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은 국가의 전반적인 보안과 물리적인 산업기반 그리고 경제적인 기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항공보안과 관련된 국가의 대응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의 신설과 인원의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며 부처별 전략적 목표가 정해져야 한다.

- 현재 국내의 항공법 체계 내의 항공보안관련 규정은 내용과 체계가 미약하며 항공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각

* 건설교통부, 항공보안 강화대책, 2001. 10

각의 주체에게 적합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항공법 체계를 미연 방항공법의 항공보안관련 법규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법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항공보안을 위협하는 집단의 기술적 접근 형태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항공보안 조직과의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내의 항공 보안 관련 법규정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며 회람과 지침을 통하여 정보의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1. Federal Register, FAR Part 21,2001. 11.
2. Federal Register, FAR Part 99,2001. 11.
3. Federal Register, FAR Part 107,2001. 11.
4. Federal Register, FAR Part 108,2001. 11.
5. Federal Register, FAR Part 109,2001. 11.
6. Federal Register, FAR Part 121,2001. 11.
7. Federal Register, FAR Part 129,2001. 11.
8. Federal Register, FAR Part 139,2001. 11.
9. Federal Register, FAR Part 191,2001. 11.
10. FAA, Advisory Circulars 00-58, 1998. 05.
11. FAA, Advisory Circulars 107- 1, 1972. 05.
12. FAA, Advisory Circulars 108- 1, 1981. 10.
13. FAA, Advisory Circulars 108- 2, 1981. 10.
14. FAA, Advisory Circulars 108- 3, 1981. 11.
15. FAA, Advisory Circulars 135- 4, 1976. 04.
16. 노해출판사, “항공법”, 2001.
17. 교통안전공단, “제7회 항공안전과 Human Factors 세미나”, 2001. 10.
18.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산업정책연구소, “제1차 항공보안 심포지엄 (Aviation Security Symposium)”, 2001. 11. 8.
19. FAA, “Civil Aviation Security Strategic Plan 2001-2004”, April 2001.
20. GAO REPORT 01-1166R, SEPTEMBER 20, 2001.